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류 섭취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의무 및 가중처벌 근거 신설〉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27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27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주류 섭취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설(안 제57조제6항 및 제16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3
2. 주류등 섭취·사용 등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신설(안 제146조)	14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221812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희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6.
3. 회 부 일 : 2026.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등(주류·마약류·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다수의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

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주류등의 섭취·
사용등의 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주류 섭취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설(안 제57조제6항 및 제16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가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u>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⑦ -----제6항까지의-----</u> ----- ----- ----- -----.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166조(과태료) ①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항공</u>

현행	개정안
3. ~ 15. (생략) ② ~ ⑦ (생략)	<u>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항공운송사업자</u> 3. ~ 1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57조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등은 주류(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제1항),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제2항).¹⁾

1)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원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원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원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

이를 위반한 경우 제4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2) 제146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3)

한편, 국내항공사들은 항공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비행·근무 시작 전 음주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자체 음주측정 실적에 따르면 2023년(4개월) 총 72건, 2024년 총 110건, 2025년 총 96건, 2026년 상반기 총 42건의 음주측정 미통과 인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조종사’의 음주로 인한 음주측정 미통과 인원도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2)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계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1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3)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5. 18.>

1. 제57조제1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2. 제57조제2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 항공사별 자체 음주측정 시 미통과 인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23년 (9월~12월, 4개월)	2024년 (1월~12월)	2025년 (1월~12월)	2026년 (1월~6월)
대한항공	조종사	5	6	4	2
	객실승무원	19	31	25	8
	항공정비사	6	6	0	1
	운항관리사	1	1	0	0
	전체	31	44	29	11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2	1	0	1
	객실승무원	6	6	9	7
	항공정비사	1	3	1	0
	운항관리사	0	0	0	1
	전체	9	10	10	9
제주항공	조종사	4	2	3	1
	객실승무원	8	12	5	3
	항공정비사	2	0	1	0
	운항관리사	0	0	0	0
	전체	14	14	9	4
진에어	조종사	0	4	1	0
	객실승무원	1	9	3	0
	항공정비사	0	1	0	0
	운항관리사	0	0	0	0
	전체	1	14	4	0
에어부산	조종사	0	1	0	1
	객실승무원	2	9	3	2
	항공정비사	0	0	0	1
	운항관리사	0	0	1	0
	전체	2	10	4	4
이스타항공	조종사	1	1	1	0
	객실승무원	1	3	2	0
	항공정비사	1	0	0	0
	운항관리사	0	1	0	0
	전체	3	5	3	0
티웨이 항공	조종사	4	3	4	1
	객실승무원	5	4	17	3
	항공정비사	1	2	6	1
	운항관리사	0	0	0	0
	전체	10	9	27	5
에어제타	조종사	0	0	0	0
	객실승무원	0	0	0	0
	항공정비사	2	0	2	0
	운항관리사	0	0	0	0
	전체	2	0	2	0
에어서울	조종사	0	0	0	1
	객실승무원	0	1	1	2
	항공정비사	0	0	0	0
	운항관리사	0	2	0	0
	전체	0	3	1	3

구분		2023년 (9월~12월, 4개월)	2024년 (1월~12월)	2025년 (1월~12월)	2026년 (1월~6월)
에어로케이 항공	조종사	0	1	1	0
	객실승무원	0	0	3	1
	항공정비사	0	0	0	0
	운항관리사	0	0	0	0
	전체	0	1	4	1
에어 프리미아	조종사	0	0	0	1
	객실승무원	0	0	3	1
	항공정비사	0	0	0	1
	운항관리사	0	0	0	0
	전체	0	0	3	3
파라타항공 (‘25. 9월 취항)	조종사	0	0	0	1
	객실승무원	0	0	0	1
	항공정비사	0	0	0	0
	운항관리사	0	0	0	0
	전체	0	0	0	2
전체		72 (총 782,756건)	110 (총 2,473,397건)	96 (총 2,639,485건)	42 (총 1,349,226건)

※ 자료제공 : 국적항공사

다만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러한 자체 음주 측정결과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항공사 내부 징계로 그칠 뿐 현행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주류등 금지 의무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음주로 적발된 사례 중 중징계 처분이 이뤄진 사례가 35%에 불과하여 항공사의 징계와 별개로 「항공안전법」상 처벌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⁴⁾

이에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항공업무 수행 중 주류 섭취에 대한

4) 제22대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7.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류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항공기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교통수단으로 고도 상공에서 고속으로 운항되어 비행 중에는 비상상황 대피가 극도로 제한되고 즉각적인 외부 지원이 불가능한 **항공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항공종사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항공업무 종사 시 주류 섭취에 대해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공안전과 위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이러한 측정에 따르도록 할 의무를 두고 있는데,⁵⁾

5)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음주 측정·단속⁶⁾과 함께 비행 전 상시 시행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음주측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경우, 주류등 섭취·사용 상태에서의 항공업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통해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유사하게,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에 개정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19호, 2026. 6. 16., 일부개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철도운영자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⁷⁾

이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공운송사업자의 수사기관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제재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보임.

6)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균 1개월에 2~3회 가량, 1회당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7)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⑤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16.>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

다만, 「철도안전법」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 신고의무도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⁸⁾

「항공안전법」 제57조는 ①주류등 섭취에 대한 금지 대상을 세분화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 종사 금지(제1항), ②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2항).⁹⁾

8)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9)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보다 높은 안전의무가 적용되는 항공종사자 등의 경우 전날 음주 후 잔류 상태로 업무에 종사하는 등 주류등의 영향이 있는 상태를 금지(제1항)할 뿐만 아니라 업무 중 주류를 섭취·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제2항)함으로써 업무 중 주류등 영향에 대한 규율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금지대상 및 수사기관 신고의무 비교 】

구분	금지대상	수사기관 신고의무
「철도안전법」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 금지(제41조 제1항)	▶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항공안전법」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 금지(제57조제1항)	▶ -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 섭취·사용 금지(제57조제2항)	▶ <u>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 섭취·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안 제57조 제6항 신설)</u>
		개정안 신설

다만, 안 제57조제6항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57조제2항 주류등 섭취·사용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가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됨.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두 유형의 위반행위 모두 신고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대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유사한 취지에서 항공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항공종사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항공안전 의무 보고’ 대상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흡연행위를 추가하려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복기왕의원안)¹⁰⁾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10) 의안번호 2219355, 최혁진의원·복기왕의원 외 11인, 발의연월일 : 2026.6.19.

나.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일선을 맡고 있는 항공종사자들의 주류 등 섭취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 및 처벌 강화 취지에 공감하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처분 등 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인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공종사자들의 주류 단속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한국항공협회

한국항공협회는 현행법상 항공종사자의 주류 등 섭취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항공청장 소속 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이를 적발할 법적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간과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수사기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 조치**라는 입장임.

2. 주류등 섭취·사용 등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신설(안 제146조)

개정안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에 다시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현행	개정안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생략) <u><신설></u>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제1항제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안은 제146조제1항제2호(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형의 가중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업무 중 상습 음주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항공종사자들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형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타 교통수단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봤을 때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제146조의 세 가지 위반 유형¹¹⁾ 중 개정안은 제1항제2호에 대해서만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①주류등의 영향으로 정상 수행 불가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제1호), ②국토교통부장관의 주류등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제3호)의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11)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5. 18.>

1. 제57조제1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2. 제57조제2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3. 제57조제3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 주류등의 섭취·사용등의 죄 가중처벌 비교 】

구분	금지행위	가중처벌 규정
제1호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없음
제2호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 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개정안 신설
제3호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주류등 측정 불응 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 없음

이에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자(제1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재범 행위(제1호 및 제2호) 사이에 제재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 측정 불응(제3호)의 경우에도 다른 운송수단 입법례인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업무 중 주류등 섭취 금지 위반과 음주측정 불응 위반 모두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음주 측정 불응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유

사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상 가중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¹²⁾

【 항공, 도로, 철도, 해상 관련 입법례와의 비교 】

구 분		법정형(최대)		형의 가중(최대)	양벌규정
항공	음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X *개정안 형의 가중 신설	X
	검사 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X	X
도로	음주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2년~6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가중O)	O (가중죄 포함)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가중O)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6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가중O)	O (가중죄 포함)
	검사 불응 (음주·약물)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1년~6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가중O)	O (가중죄 포함)

12) 만약 제1호 및 제3호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다음과 같이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구 분		법정형(최대)		형의 가중(최대)	양벌규정
철도 (운전 관제 충지)	음주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의 벌금	2년~6년 징역 또는 2천만원~4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가중O)	O (가중죄 포함)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1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가중O)	
		0.02~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6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가중O)	O (가중죄 포함)
	검사 불응 (음주· 약물)	음주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1년~6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가중O)	O (가중죄 포함)
		약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상	음주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의 벌금	2년~6년 징역 또는 2천만원~4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 가중 X)	O (가중죄 포함)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1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 가중 X)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X	O
	검사 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6년 징역 또는 1천만원~4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 가중 X)	O (가중죄 포함)

※ 관련 규정 : 타 운송수단 음주 관련 벌칙 조항(p.24) 참조

타 운송수단 입법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과 최근 개정된 「철도안전법」(법률 제21819호, 2026.12.17. 시행)의 경우 벌금 이상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또는 음주측정 불응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음주와 확인(검사) 불응의 죄를 상호 교차하여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에도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음주와 확인(검사) 불응의 죄를 상호 교차하여 형을 가중하지 않고 있음.

둘째, 현행 제14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단일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46조는 단일 법정형에 대해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가중 상한이 적용되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과 같이 음주 수치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둘 필요성, 음주와 검사 불응의 죄를 상호 교차하여 가중할 것인지 여부(예: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는 수치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형의 가중규정을 둔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으며, 해당 가중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¹³⁾

이후 위헌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¹⁴⁾과 「철도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

1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판시사항】

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2.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생략)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추어,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략)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법과 후법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함.

하여 주류등 섭취 위반 및 가중처벌규정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 「항공안전법」 제146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무관하게 단일 법정형을 규정하고 안 제146조는 이 단일 법정형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유사 교통수단인 도로, 철도, 해상의 사례를 고려하여 법정형과 형의 가중규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항공, 도로, 철도, 해상 관련 입법례와의 비교 】

구 분		법정형(최대)		형의 가중(최대)	양벌규정
항공	음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X *개정안 형의 가중 신설	X
도로	음주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2년~6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가중O)	O (가중죄 포함)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가중O)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철도 (운전 관제 종사자)	음주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의 벌금	2년~6년 징역 또는 2천만원~4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가중O)	O (가중죄 포함)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1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가중O)	
		0.02~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 분		법정형(최대)		형의 가중(최대)	양벌규정
해상	음주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의 벌금	2년~6년 징역 또는 2천만원~4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 가중 X)	O (가중죄 포함)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1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불응 간 교차 가중 X)	

※ 관련 규정 : 타 운송수단 음주 관련 벌칙 조항(p.24) 참조

참고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법안심사소위¹⁵⁾에서는, 이전의 「도로교통법」 등의 체계에서는 모든 음주 단계에 대하여 한 가지 유형의 처벌 유형을 두었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난 이후 음주 수치에 따라 차등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및 해상교통 체계가 마련되어 철도교통도 이와 유사하게 법정형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고,

「도로교통법」 등에서 음주와 검사 불응의 죄를 상호 교차하여 가중하는 것은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음주와 검사 불응의 죄를 상호 교차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반영하여 현행대로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80

1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025.11.26.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026.4.15.

참고

타 운송수단의 음주 관련 벌칙 조항 (철도, 도로, 해운)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2조제6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1. 7., 2020. 4. 7., 2020. 6. 9.>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 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 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4. 5. 21., 2017. 8. 9., 2026. 6. 16.>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④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6. 16.> ⑤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16.> ⑥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2.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도선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제113조(벌칙) ①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
--	---	--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80조(형의 가중) ① 술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

<신설 2026. 6. 16.>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약물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6. 6. 16.>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제1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4. 7., 2026. 6. 16.> ④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4. 7., 2026. 6. 16.> ⑤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79조의2 또는 제80조(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